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11.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1.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13.

다.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1.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허영희】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2) 출연시기: 2021년도(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
- 3) 출연내용: 담보력이 부족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만으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
- 4) 출연의 필요성: 코로나 19 감염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여 동 재단의

신용보증 한도 소진.

- 5) 출연금: 5억 원(출연금액 부분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
안건임)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신용
보증재단의 2021년도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동 재단에 출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의 저리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총 124개 업체 4,298,200천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특히, 올 해 신청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며 올 해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감염병 특성상 대면접촉이 많은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의 서비스업 대출금이 전분기 대비 47조 2,000억 원이
늘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는 전체
산업대출 증가액의 68%를 차지하는 규모임. 중소기업의 주요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역시 18조 8,000억 원 증가해 이 또한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자료를 보건데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게 유지를 위해 금융대출로 버티나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신용자금 대출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내년도 신용보증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현 상황이 위기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대출 상담과 신청서 접수에 은행 신용대출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없음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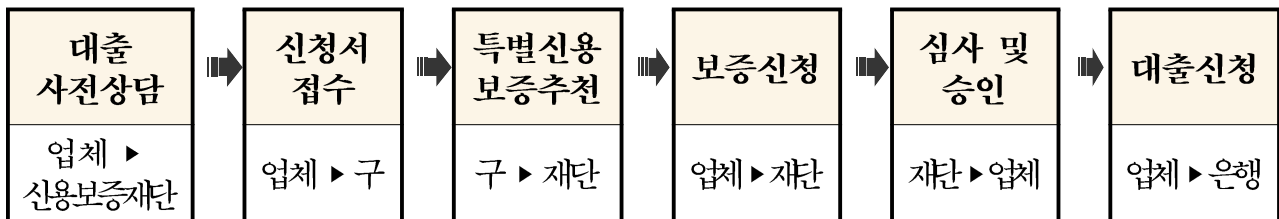
신용보증재단 사업 현황

1. 특별신용보증 현황

(2020.11.16.기준, 단위 : 개,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11	10	21	82
보증금액	331,750	251,250	762,300	2,952,900

2. 지원절차



3. 출연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합계
2	2	2	2	2	10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전 자금을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특별신용보증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지정 유망 선진기술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2.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② 제1항의 특별신용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